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9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홍배・이연희

김남근 • 한민수 • 조승래

박 정ㆍ김원이ㆍ이인영

황명선 • 민형배 • 전현희

김영배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 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(안 제6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4(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전유공 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로 명예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4(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
	당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	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
	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
	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
	이외에 별도로 명예수당을 지
	<u>급할 수 있다.</u>
	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
	지급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
	<u>마련하여야 한다.</u>